

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715호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7월 13일

제안자 : 이상식의원 외 5명

1. 수정이유

- 현재 우리도의 경제적·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수정하고, 일부 조문의 수정을 통해 입법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(수정내용)

- 안 제3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도 및 산하 출자·출연기관 소속 노동자,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·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및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로 함
- 안 제5조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관련자들을 고루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수정함
- 지난 390회 임시회 「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」을 통해 조례상의 “근로”라는 용어를 “노동”으로 수정한 바 있어 조문의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, “근로자단체”를 “노동자단체”로 수정함

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한다.

안 제2조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하고, “인간으로서 최소한의”를 “최소한의”로 한다.

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 호”를 “각 호의 사람”으로, “생활임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투자”를 “출자”로,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안 제4조제2항제4호 중 “위원회”를 “도지사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“5명”을 “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도의 생활임금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2.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한다.
 - 가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 - 나. 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

- 다. 학교, 연구소,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,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
- 라.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
- 마.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안 제6조제7항 중 “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대해서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0월 31일”을 “9월 30일”로 한다.

안 제8조제2항 중 “충청북도”를 “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했을 경우 도지사는 생활임금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안 제9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안 제10조를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<u>근로자의</u> 생활안정과 교육·문화·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노동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생활임금”이란 적용대상 <u>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</u>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,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u>노동자</u>-----<u>최소</u> <u>한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적용대상)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<u>생활임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</u>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 및 도 산하 <u>투자·출연 기관</u> 소속 근로자 2.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<u>근로자</u> 3.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<u>근로자</u> 4. <u>도의 공사, 용역 사업에 있어</u>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형식상 독립 사업자 형태로 노 	<p>제3조(적용대상) ----- -----<u>각 호의 사람</u>----- -----<u>제4조에 따른</u> <u>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<u>출자</u>----- -----<u>노동자</u>----- 2. ----- ----- -----<u>노동자</u>----- 3. ----- -----<u>노동자</u>----- <p>〈삭 제〉</p>

원 안	수 정 안
<p><u>무를 제공하더라도,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, 그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</u></p> <p>제4조(생활임금위원회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<u>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</u>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<u>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.</u></p> <p>1.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</p> <p>2. <u>도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</u></p>	<p>제4조(생활임금위원회 설치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<u>도지사</u>----- -----</p> <p>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<u>7명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/u>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은 도의 생활임금</u></p>

원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</u></p> <p>3. <u>근로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</u></p> <p>4. <u>학교, 연구소,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및 생활임금,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</u></p> <p>5. <u>그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</u></p> <p>③ <u>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~ ⑥ (생략)</p> <p>⑦ <u>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</u></p> <p>2. <u>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한다.</u></p> <p>가. <u>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</u></p> <p>나. <u>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</u></p> <p>다. <u>학교, 연구소,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,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</u></p> <p>라. <u>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</u></p> <p>마. <u>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한 차례만 -----.</p> <p>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~ ⑥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<u>대해서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</u>----- ----- -----.</p>

원 안	수 정 안
<p>제7조(생활임금의 결정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.</p> <p>1. 도의 물가상승률, <u>근로자</u>의 평균 가계지출수준, 생계비 등 경제·노동 환경</p> <p>2. ~ 3. (생 략)</p> <p>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<u>10월 31일</u>까지 고시한다.</p> <p>1 ~ 3. (생 략)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7조(생활임금의 결정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노동자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3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u>9월 30일</u>----- -----.</p> <p>1 ~ 3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8조(생활임금의 장려) ① (생 략)</p> <p>② 도지사는 <u>충청북도</u>와 위탁·용역·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,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.</p> <p>③ 도지사는 <u>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·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8조(생활임금의 장려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했을 경우 도지사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</u></p>

원 안	수 정 안
<p>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 <u>니한</u>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.</p>	<p>제9조(시행규칙)----- <u>필요한</u>----- -----.</p> <p>(삭 제)</p>

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(수정안 포함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·문화·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생활임금”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,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1. 도 및 도 산하 출자·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
2.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
3.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

제4조(생활임금위원회 설치)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
2.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
3.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, 조사 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도의 생활임금 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2.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한다.

가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
나. 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

다. 학교, 연구소,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,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

라.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

마.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,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

관계부서 공무원,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생활임금의 결정) ① 도지사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.

1. 도의 물가상승률,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, 생계비 등 경제·노동 환경
2.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
3.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.

1. 생활임금의 수준
2. 생활임금 적용대상
3.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도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

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.

제8조(생활임금의 장려)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도와 위탁·용역·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,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했을 경우 도지사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